

[2021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및 필수교육 안내]

■ 어린이집 관련 법,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

교육명	구분	내용	대상
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 의무자 교육	근거	·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,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· 아동복지법 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, 동법 시행령 제26조 ·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·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3영역(건강, 안전)3-5-2-① · 2021년 보육사업안내(p.123-130)	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· 연 1회(1시간 이상이나 신고의무자 교육을 포함하여 3시간)	
	교육	·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	
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	근거	·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[별표8] · 2021년 보육사업안내(p.123)	
	횟수	· 연 1회(1시간이상) - 교육 이수한 교사가 전달연수 가능	
	교육	·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	
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	근거	·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,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	사회복지사 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
	횟수	· 연 1회(1시간이상)	
	교육	· 매년 1/1~12/31까지 실시한 교육결과는 2021년 1월말까지 시청으로 제출 ·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(https://cyber.kohi.or.kr) ·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시 '온라인 교육'은 교육이수증 첨부	
아동성폭력예방교육	근거	·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	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·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(신규 임용자 임용 후 2개월 이내)	
	교육	· 1.1~12.31까지 실시한 성폭력예방교육실시결과(추진실적)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(http://shp.mogef.go.kr)에 등록 필수	
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	근거	·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, 동법시행령 제3조	사업주 및 모든 직원
	횟수	· 연 1회 이상(1시간 이상)	
	교육	· 예외인정-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 고용 또는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단순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인정	

교육명		구분	내용	대상
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	근거		· 근로기준법 제76조의2	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	· 연 1회(1시간 이상)	
	교육		* 어린이집 자체교육진행가능	
장애인식개선교육	근거		· 장애인 복지법 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16조	
	횟수		· 연 1회(1시간 이상)	
	교육		* 교육완료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에 추진실적 등록	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	근거		·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	
	횟수		· 연 1회(1시간 이상)	
	교육		* 어린이집 자체교육 진행가능	
개인정보보호교육(CCTV)	근거		·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	
	횟수		· 연 1회 이상 (1시간 이상)	
	교육		·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자체교육 가능	
신규 교육	어린이 안전교육	근거	·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·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· 보육사업안내(p.123)	
		횟수	· 연 1회(4시간이상), 응급처치 실습(2시간)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* 실습(2시간)+이론(2시간)	
		교육	·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	
	영유아 성행동문제 대응을 위한 담당자 및 원장 역량강화교육	근거	· 어린이집 영유아 성행동 문제 관리·대응 매뉴얼 · 2021 보육사업안내(p.127)	영유아 성행동문제 대응 담당자 및 원장
		횟수	· 매년 1회 (어린이집성교육 담당자 이수 후 전달연수 필수)	
		교육	·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(어린이집당 1명 신청) ·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하여 전달연수가능 - 어린이집 영유아 성행동 문제 관리 대응 매뉴얼활용	
	등·하원 안전교육	근거	·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 · 2021 보육사업안내(p.126)	모든 보육교직원
		횟수	· 연1회	
		교육	· 집합교육, 자체교육, 온라인 교육 가능	

■ 어린이집 운영관련 교육

교육명		구분	내용	대상
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시	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	근거	·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	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전자
		횟수	· 신규교육: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실시 · 정기교육: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	
		교육	· 집합교육: 도로교통공단-안전운전 통합민원 (오프라인 교육만 가능)	
	(신규교육)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	근거	· 소방시설을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(어린이통학서브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) · 2021년 보육사업안내(p.123)	보육교직원 (차량 동승자)
		횟수	· 신규교육: 어린이집 통학버스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 · 정기교육: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 *도로교통법 상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('20.5.26.개정)	
		교육	· 온라인, 오프라인 교육 모두 가능 (한국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)	
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시	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	근거	·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0조	어린이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 (담당 보육교직원)
		횟수	· 신규교육: 어린이 놀이시설 인도 받은날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 된 날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전 3개월이내 · 정기교육: 2년마다 1회(1회 4시간 이상)	
		교육	· 집합교육: 한국생활안전연합,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, 대한산업안전협회 · 온라인 교육: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, 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(고객 참여마당)	
연 면적 430㎡ 이상인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어린이집	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	근거	·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, 시행규칙 제33조 * 실적 입력 : 석면 조사 실시 후,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석면관리 실태조사 관련사항 입력(어린이집 운영- 설치관리운영- 석면관리실태조사)	연면적 430㎡ 이상인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담당자, 담당 보육교직원
		횟수	· 신규교육: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 부터 3개월이내 8시간 이상(집합교육으로 실시) · 보수교육: 2년마다 1회(4시간이상) (온라인 교육으로 실시)	
		교육	· 신규) 집합교육: 환경보건협회 · 보수) 온라인 교육: 국립환경 인력개발원 e-러닝, 환경보건협회	
	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	근거	·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시행령 제2조	연면적 430㎡ 이상인 어린이집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
		횟수	· 신규교육: 1년 이내 1회 · 보수교육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	
		교육	· 집합교육 & 온라인 교육: 환경보건협회 (http://www.epa.or.kr/main.jsp)	

교육명		구분	내용	대상
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	식품 위생 교육	근거	· 식품위생법 제41조, 제88조	· 조리사 , 영양사 ·50인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 책임자
		횟수	· 신규교육: 연 1회(6시간)- 집단 급식소를 설치, 운영하려는 자 · 보수교육: 연 1회(3시간)- 집단 급식소를 설치, 운영하려는 자	
		교육	· 집합교육&온라인 교육- 한국식품산업협회 (www.kfia.or.kr/kfia/main.php)	
승강기 (덤웨이터) 설치시설	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(덤웨이터)	근거	·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(승강기의 안전관리자) *덤웨이터 바닥면적 0.5㎡이하, 높이 0.6㎡이하의 경우 제외	승강기 소유주 또는 승강기 설치건물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담당자
		횟수	· 신규교육: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1회 · 보수교육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	
		교육	· 집합교육 & 온라인 교육: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교육센터	
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		근거	· 소방시설,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(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)	선임된 소방안전관리 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(건물대표자)
		횟수	· 신규교육: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· 보수교육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	
		교육	· 온라인 교육: 한국소방안전원http://www.kfsi.or.kr/	
영양사 식품 위생 교육 (특별 위생 교육)		근거	·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 * 영양사 특별 위생 교육(식품위생법 제 56조 및 시행규칙 제83조에 의거) -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이 없는 해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 식중독 발생 및 확산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3시간 교육 이수	집단 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
		횟수	2년에 1회/ 6시간	
		교육	· 온라인교육:KDA온라인위생교육센터 (http://www.kdaedu1.or.kr/)	
조리사 위생 교육		근거	식품위생법 제56조, 동법시행령 제83조, 제84조	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자
		횟수	2년에 1회(6시간) * 홀수년 특별위생교육 포함	
		교육	집합교육&온라인 교육:(사)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(http://www.ikca.or.kr/)	
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교육		근거	· 2021 보육사업안내	보육교직원
		횟수	· 연 1회	
		교육	· 자체교육: 수원시청- 수원소식-시정소식-수원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· 내용: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행동요령등 포함	
감정 노동자 보호교육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교육		근거	·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 ·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4-3-2	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(보육교 직원) * 사업주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
		횟수	· 연1회 이상	
		교육	· 자체교육: 산업안전보건공단▷자료마당▷안전보건자료실▷업종별 자료▷서비스업▷공통▷책자/교재“고객응대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” · 가이드: 산업안전보건공단▷사업소개▷직업건강▷근로자건강 증진▷건강증진자료실▷미디어자료“직업건강가이드라인 -보육교사”	

■ 평가제 관련 교육

교육명	구분	내용	대상
건강, 영양교육	근거	· 어린이집 평가제 3-3-3-②	모든 보육교직원 (원장, 담임교사, 조리원)
	횟수	·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	
	교육	· 어린이집 자체교육, 외부 집합교육, 온라인 교육 등	
응급처치교육 (심폐소생술)	근거	· 어린이집 평가제 3-5-2-③	보육교직원 1인 이상
	횟수	· 연 1회 이상	
	교육	· 집합교육(반드시 실습 포함)	
안전교육	근거	· 어린이집 평가제 3-5-2-①	원장, 담임교사, 연장반전담 교사
	횟수	· 연 1회 이상	
	교육	· 어린이집 자체교육, 외부 집합교육, 온라인 교육 등	
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	근거	· 어린이집 평가제 3-5-2-①	임용된 모든 보육 교직원 * 입사 1개월 미만 교직원 평정 제외
	횟수	· 연 1회 이상	
	교육	· 어린이집 자체 교육, 외부 집합 교육, 온라인 교육 등	
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교육	근거	· 어린이집 평가제 3-4-3-③	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
	횟수	· 신규 안전교육: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 하기 전 실시 · 정기 안전교육: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	
어린이집 통합버스 동승자 안전 교육	근거	· 어린이집 평가제 3-4-3-③	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 하는 성인
	횟수	· 최초 1회	
	교육	· 온라인 교육) 사이버 교통학교	
보육교직원 역량개발 교육 (직무교육 외)	근거	· 어린이집 평가제 4-4-1-②	원장, 담임교사
	횟수	· 연 1회 이상	
	교육	· 어린이집 자체 교육, 외부집합 교육, 온라인 교육 등	
직무교육 (보수교육)	근거	· 평가제 4-4-1-②	원장, 담임교사, 연장반 전담교사